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를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관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을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협회”를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을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회”를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회”를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협회”를 각각 “관리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을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으로 한다.

다.

별표 1 제1호차목에 “1) 일반 정보·통신·사무기기”를 신설하고, 같은 목에 2)부터 4)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 정보·통신·사무기기	(현행과 같음)
2) 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전지의 종류</li> <li>○ 단전지의 형태</li> <li>○ 단전지의 외부 재질</li> <li>○ 단전지 전류용량</li> </ul>
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전지의 종류</li> <li>○ 단전지의 형태</li> <li>○ 전지의 형태 및 치수</li> <li>○ 단전지의 외부 재질</li> <li>○ 단전지 전류용량</li> <li>○ 단전지 최대 상한충전전압</li> <li>○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li> </ul>
4)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패드</li> <li>○ 주기판</li> <li>○ 전지</li> </ul>

별표 3 제1호 아목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를 “대상 없음”으로 하고, 같은 목의 비고를 삭제하며, 차목 1)의 “배터리”를 “전지”로 하고, 차목 2)의 “충전전압”을 “최대 충전전압”으로 하며, “리튬 이차 단전지”를 “단전지(리튬계)”로 한다.

별표 4 제1호 아목의 “대상 없음”을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로 하고, 비고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1호 사목 6)과 사목 17)을 삭제하고, 아목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를 “대상 없음”으로 하고, 차목 1)의 “배터리”를 “전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29)와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중 29)를 31)로 하며, 29)의 “28)”을 “30)”으로 하고, 아목의 “대상 없음”을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로 하며, 자목 4)와 차목 6)을 삭제하고, 차목 11)의 “태블릿”을 “태블릿”으로 한다.

29)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0) 전기가열기기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

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모델구분</th> </tr> </thead> <tbody> <tr> <td>&lt;신 설&gt;</td> <td>○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td> </tr> <tr> <td>&lt;신 설&gt;</td> <td>&lt;신 설&gt;</td> </tr> <tr> <td>&lt;신 설&gt;</td> <td>&lt;신 설&gt;</td> </tr> <tr> <td>&lt;신 설&gt;</td> <td>&lt;신 설&gt;</td> </tr> </tbody> </table>	분류	모델구분	<신 설>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모델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 일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정보·통신·사무 기기</td> <td></td> </tr> <tr> <td>2) 단전지</td> <td>○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 재질 ○ 단전지 전류용량</td> </tr> <tr> <td>3) 전지</td> <td>○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전지의 형태 및 치수 ○ 단전지의 외부 재질 ○ 단전지 전류용량 ○ 단전지 최대 상한 충전전압 ○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td> </tr> <tr> <td>4)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를 포함한 다.)</td> <td>○ 키패드 ○ 주기판 ○ 전지</td> </tr> </tbody> </table>	분류	모델구분	1) 일반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사무 기기		2) 단전지	○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 재질 ○ 단전지 전류용량	3) 전지	○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전지의 형태 및 치수 ○ 단전지의 외부 재질 ○ 단전지 전류용량 ○ 단전지 최대 상한 충전전압 ○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4)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를 포함한 다.)	○ 키패드 ○ 주기판 ○ 전지
분류	모델구분																						
<신 설>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분류	모델구분																						
1) 일반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사무 기기																							
2) 단전지	○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단전지의 외부 재질 ○ 단전지 전류용량																						
3) 전지	○ 단전지의 종류 ○ 단전지의 형태 ○ 전지의 형태 및 치수 ○ 단전지의 외부 재질 ○ 단전지 전류용량 ○ 단전지 최대 상한 충전전압 ○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4)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를 포함한 다.)	○ 키패드 ○ 주기판 ○ 전지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아. 전동 공구</td> <td>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td> </tr> <tr> <td>차. 정보·통신·사무 기기</td> <td>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충전 전압 4.4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td> </tr> </tbody> </table>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충전 전압 4.4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아. 전동 공구</td> <td>대상 없음</td> </tr> <tr> <td>차. 정보·통신·사무 기기</td> <td>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td> </tr> </tbody> </table>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대상 없음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충전 전압 4.4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대상 없음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아. 전동 공구</td> <td>대상 없음</td> </tr> </tbody> </table>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대상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아. 전동 공구</td> <td>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td> </tr> </tbody> </table>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대상 없음								
분류	품목								
아. 전동 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별표 13]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5) 모발관리기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삭제>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8) 전기액체가열기기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9)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10) 전기온수기		10) 전기온수기
	11) 전기냉장·냉동기기		11) 전기냉장·냉동기기
	12) 전자레인지		12) 전자레인지
	13) 전기건조기		13) 전기건조기
	14)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14)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15) 전기마사지기		15) 전기마사지기
	16) 냉방기		16) 냉방기
	17) 전기가열기기		<삭제>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19) 팬, 레인지 후드		19) 팬, 레인지 후드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21) 가습기		21) 가습기
	22)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22)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현행		개정안	
아. 전동공구	<u>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u>	아. 전동공구	<u>대상 없음</u>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는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u>전지</u> 충전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2) 전기 용해기
	3) 이·미용기기		3) 이·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구강청결기		5) 구강청결기
	6) 해충퇴치기		6) 해충퇴치기
	7) 전기집진기		7) 전기집진기
	8) 서비스기기		8) 서비스기기
	9) 전기에어커튼		9) 전기에어커튼
	10)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0)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1) 게임기구		11) 게임기구
	12) 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12) 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13) 전기훈증기		13) 전기훈증기
	14) 산소이온발생기		14) 산소이온발생기
	15) 전기세척기(초음파 세척기는 제외한다)		15) 전기세척기(초음파 세척기는 제외한다)
	16) 전기차 충전기		16) 전기차 충전기
	17) 가정용 전동제봉기		17) 가정용 전동제봉기
	18) 사우나기기		18) 사우나기기
	19)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19)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1) 전기분무기		21) 전기분무기
	2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		2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

현 행		개 정 안	
	<p>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p> <p>2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p> <p>25) 자동판매기</p> <p>26) 전기소독기</p> <p>27) 제습기</p> <p>28) 음식물처리기</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29) 그 밖에 1)부터 28)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p> <p>2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p> <p>25) 자동판매기</p> <p>26) 전기소독기</p> <p>27) 제습기</p> <p>28) 음식물처리기</p> <p>29) <u>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u></p> <p>30) <u>전기가열기기</u></p> <p>31) 그 밖에 1)부터 30)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아. 전동공구	<u>대상 없음</u>	아. 전동공구	<u>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u>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p>1) 텔레비전수상기</p> <p>2) 디스크 플레이어</p> <p>3) 오디오시스템</p> <p>4) <u>전자악기</u></p> <p>5) 오디오프로세서</p> <p>6) 영상프로세서</p> <p>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p> <p>1) 텔레비전수상기</p> <p>2) 디스크 플레이어</p> <p>3) 오디오시스템</p> <p><u>&lt;삭 제&gt;</u></p> <p>5) 오디오프로세서</p> <p>6) 영상프로세서</p> <p>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p>1) 모니터</p> <p>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p> <p>3) 프로젝터</p> <p>4) 문서 세단기</p> <p>5) 천공기</p> <p>6) <u>제본기</u></p> <p>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8) 무정전공급장치(정</p>	<p>차. 정보·통신·사무기기</p> <p>1) 모니터</p> <p>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p> <p>3) 프로젝터</p> <p>4) 문서 세단기</p> <p>5) 천공기</p> <p><u>&lt;삭 제&gt;</u></p> <p>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8) 무정전공급장치(정</p>	

현 행		개 정 안	
	<p>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p> <p>10) 코팅기</p> <p>11) 노트북컴퓨터(<u>테블릿</u> PC를 포함한다)</p> <p>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p> <p>10) 코팅기</p> <p>11) 노트북컴퓨터(<u>테블릿</u> PC를 포함한다)</p> <p>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V체크)

- ①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②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 )  
 ③ 제조업체 연구개발용( )      ④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⑤ 제품시험 목적용( )      ⑥ 기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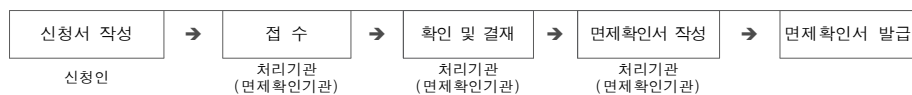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 설명서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비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제조자명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 모델명(필요시 별지사용)	적용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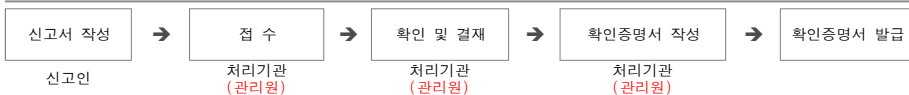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 처리 절차



###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변경[ ] (필요시 별지 사용)		
세부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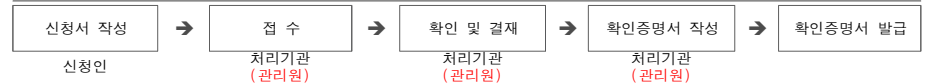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 처리 절차



###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p> <p>-----</p> <p>-----</p> <p>-----</p> <p>-----</p> <p>-----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p> <p>----- 관리원-----</p> <p>-----</p> <p>-----</p> <p>-----</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p>	<p>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p> <p>-----</p>

<p>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2. (생 략)</p> <p>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생 략)</p> <p>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p> <p>-----</p> <p>-----</p> <p>-----</p> <p>----- 관리원-----</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p> <p>----- 관리원-----</p> <p>-----</p> <p>-----</p> <p>-----</p> <p>-----</p> <p>-----</p> <p>-----</p> <p>-----</p>
---	---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u>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u>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 <u>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u>협회의 장</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② ----- <u>관리원</u> -----.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u>협회의 장</u> 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u>관리원</u>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u>협회의 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u>협회의 장</u> 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u>관리원</u>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생략)

-----  
----- 관리원-----  
-----.

1. 2. (현행과 같음)

② -----  
----- 관리원-----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 -----

② (현행과 같음)